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을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62조제2항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같은 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 3. (생 략)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u>검찰청의 검사</u> 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 13. (생 략)	제2조(수리사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u> ----- ----- 5.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수리절차) ①·② (생 략) ③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u>검찰청</u> 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조(수리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 ----- -----.
제26조(수사의 촉탁)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u>검찰청 검사장</u> 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제26조(수사의 촉탁) ① ----- -----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u>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③ (생략)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 부 등) ① (생략)

경찰청장-----

②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

----- 지방공소청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 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제151조(항소·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 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 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② (생략)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생략)

② 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1조(항소·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

공소청-----.

② (현행과 같음)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소청-----
-----.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

-----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제162조(내사사건·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생략)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 ~ 4. (생략)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

-----.

② -----

-- 공소청-----

-----.

제162조(내사사건·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

----- 군검사가 -----

-----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

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7. (생략) ③ ~ ⑥ (생략)	<u>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u> ----. 6.·7.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